이효석문화예술촌 재위탁 동의안

의 안 번 호 174

제안연월일 : 2019. 10. .

제 안 자 : 평창군수

1. 제안이유

○「평창군 이효석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제14조에 따라 이효석문화예술촌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기존 수탁자에게 시설을 재위탁 하고자 하며, 이에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

2. 관련근거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시행령 제19조
- 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」제5조
- 「평창군 이효석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제14조

3. 위탁개요

○ 시 설 명 : 이효석문화예술촌

○ 면 적 : 연면적 2,363 m², 부지면적 118,389 m²

○ 주요시설 : 이효석문학관, 관리동, 매표소, 정원, 주차장, 화장실,

마중동, 생가, 독서 쉼터, 근대문학체험관, 푸른 집,

달빛나귀, 꿈꾸는 달 등

○ 개 관 일 : 이효석문학관 2002. 9. 7./효석달빛언덕 2018. 8. 20.

○ 위탁기간 : 2020. 1. 1. ~ 2020 12. 31.(1년)

○ 위탁금액: 499,400천원(2020년 당초예산안 반영)

4. 향후계획

- 이효석문화예술촌 위탁 운영 협약서 상호 검토 : 2019. 10.
- 이효석문화예술촌 (재)위탁 운영 체결 : 2019. 11
- 협약 내용 공증 : 2019. 12.

5. 기대효과

- 기존 수탁자의 위탁관리 운영으로 안정적인 시설 운영 도모
- 문화예술 사업의 정착을 통해 평창군을 찾는 방문객에게 볼거리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
- 붙임 1. 효석문화예술촌 재산목록 1부
 - 2. 관계법령 발취서 1부. 끝.

「붙임 1」

효석문화예술촌 시설현황

1. 이효석문학관 시설현황

□ 총괄

시설명	면적(m²)	위탁시설	관리주체
 계	36,660.83	5개	
문학관	893.56	전시실 및 관리동 등 시설 일체	문화관광과
화장실	60.27	화장실 1동, 이동식 간이화장실 2동	u u
주차장	2,720	문학관주차장 2	<i>u</i>
안내간판	-	3개(지주형)	"
관리부지	32,987	9필지(건물부지 및 토지)	"

□ 세부내역

1) 문학관

○ 위치: 봉평면 창동리 544-3번지

○ 규모: 부지면적 27,394㎡, 건물 893.56㎡(지상 1층/ 2동)

구 분	면적(m²)	주 요 시 설
문학관	664.01	문학전시실(172.80), 메밀자료실(93.32), 문학교실(103.90), 학예연구실(35.28), 홀 및 전시실(168.83), 지하(89.88)
관리동	229.55	관리실(29.16), 휴게실(65.64), 화장실(76.60), 기타(58.15)
매표소	-	야외 매표소(실내매표소로 운영)
정 원	-	동상 1점, 잔디 식재

<관리부지>

토지소재	지번	지목	면적(m²)	소유자	비고
계	4필지		27,394		
봉평면 창동리	544-1	대	3,226	평창군	
· · ·	544-3	대	14,587	"	
봉평면 원길리	765-6	대	9,557	"	
u	765-11	대	24	"	

<주차장>

토지소재	지번	지목	유형	면적(m²)	주차가능대수	비고
계	2필지			2,720	44대	
봉평면 창동리	548-3	차	소형	2,122	30	비포장
"	530-13	답	대형	598	14	"

<단지 내 도로>

토지소재지	지번	지목	면적(m²)	소유자	비고
계	2필지		2,519		
봉평면 창동리	544-16	도	2,341	평창군	포장
봉평면 원길리	765-12	도	178	"	"

2) 화장실

○ 위치: 봉평면 창동리 530-15번지

○ 규모: 대지면적(354m²), 건물(지상1층, 연면적 81.39m²)

구 분	면적(m²)	주요시설
화장실	81.39	남자화장실(20.91), 여자화장실(30.36), 다목적화장실 (9.0), 현관 및 경사로(21.12)
이동식 간이화장실	18.2	이동식 간이화장실 2동(동당 남·녀 각 1칸)

<관리부지>

토지소재지	지번	지목	면적(m²)	소유자	비고
계	1필지		354		
봉평면 창동리	530-15	대	354	평창군	

3) 안내간판

위 치	유형	규격	내용	비고
계	4개			
봉평면 창동리	지주	60cm×200cm	효석문학관 가는길	
ıı.	"	160cm×600cm	효석문학관	문학관 주차장
ıı .	"	90cm×200cm	안내 사인몰	"

4) 소장자료

- (유 품) 육필원고 200매, 사진 및 유품 15점 등 총 230점
- (서지자료) 초판본 작품집, 작품 수록 잡지, 연구논문집 등 2,500여점
- (영상자료) 영화, 다큐멘터리, 드라마 등 12점
- (소 품) 해방이전물품 및 소품 총 60여점
- (기 타) 훈장, 유족관련 물품 등 100여점

2. 효석달빛언덕 시설현황

□ 토지조서

연번	소재지	지번	지목	면 . 지 적	적(m ²) 관리면적	소 유 자	비고
	계(19필지)	-	-	85,402	59,206	-	
1	봉평면 창동리	529	전	2,078	2,078	평창군	
2	"	529-4	하천	13	13	평창군	
3	"	533-10	구거	26,866	2,261	농림수산부	
4	′/	533-25	구거	552	552	평창군	
5	1/	573	대	337	337	평창군	
6	′/	574	전	4,857	3,473	평창군	
7	′/	574-1	대	2,332	2,332	평창군	
8	′/	574-3	전	384	384	평창군	
9	′/	574-4	전	899	899	평창군	
10	′/	574-5	전	135	135	평창군	
11	′/	574-6	전	593	593	평창군	
12	′/	575	답	2,136	2,136	평창군	
13	′/	575-1	도로	489	468	건설교통부	
14	"	575-2	하천	214	214	평창군	
15	"	575-3	답	2,136	2,136	평창군	
16	"	576	전	2,098	2,098	평창군	
17	′/	579-1	도로	195	9	건설교통부	
18	′/	551	전	1,997	1,997	평창군	'19년 취득
19	′/	산167	임	37,091	37,091	평창군	'19년 취득

□ 시설조서

1) 건축물

(단위 : m²)

연번	건물명	지번	대지 면적	건축면적 연면적	구조	내용	비고
	계		10,316	1,042.38 1,383.22			
1	마중	575-3	498	171.93 171.93	목구조	관리동, 전시동 (2동)	신축
	생가	533-25		86.48 86.48	철근 콘크리트	생가(3동)	기존
	나귀 전시장 (독서쉼터)	573 574		38.46 38.46	철근 콘크리트	당나귀 축사 (1동) => 독서쉼터 조성(2019년)	증축 (신축)
2	2 문학 체험관	574-1 574-3 574-4 574-5	6,361	498.97 498.97	철근 콘크리트	전시관(1동)	증축 (신축)
	푸른집1	574-6		79.29 79.29	철근 콘크리트	전시관(1동)	기존
	푸른집2	576		83.86 83.86	철근 콘크리트	전시관(1동)	증축 (신축)
3	달빛 나귀	575 575-3	1,408	37.90 37.90	철골	전망대(1동)	신축
4	꿈꾸는 달	529	2,049	155.77 386.33	철근 콘크리트	전시관·휴게시설 (1동)	신축

2) 조형물

연번	명 칭	규 격	구 조	비고
1	나 귀	2,230*1,900*980	스테인레스	
2	달	D=8,000, H=9,500	H빔, FRP	
3	안 경	3,300*3,300	브론즈	
4	만 년 필	2,920*260	브론즈	

관계법령 발췌

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

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(이하 "관리위탁"이라 한다)할 수 있다.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.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.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. ⑥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(轉貸)할 수 있다.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,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.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

제19조(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) ①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 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.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,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.

③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

제5조(위탁조건 및 기간) ① 군수는 위탁사무에 대한 그 필요성·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춰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- 1. 충분조건: 법령이나 조례에서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위탁사무
- 2. 필요조건: 제7조에 따른 의회의 동의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 항제2호의 조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.

4 평창군 이효석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

제14조(위탁기간) ① 문화시설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. ② 군수는 위탁업무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해당 재위탁계획에 대한 평창군의회(부칙 제3조에서 "의회"라 한다)의 동의를 얻어 동일한 수탁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.